#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36

발의연월일: 2021. 11. 25.

발 의 자:조승래・양정숙・한준호

도종환 • 이원욱 • 이용빈

홍익표 · 소병철 · 김정호

김상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행 이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교육 혁신·인력 양성·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33조 및 제35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0조에 따라 소관"을 "소관"으로, "선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9조제3항에 따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제9조제4항에 따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7항 중 "등록·공개하여야"를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제8항 중 "·공개 범위는"을 "및 공개의 내용 등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를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또는 기록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노트"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로, "관리"를 "기록 및 관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	2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	- <u>소관</u>
기관의 장이 <u>선정하는</u> 과제를	<u>정하는</u>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	8
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	
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	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
하는 행위	요조사에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

 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

 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 회에 참여하는 행위

9. (생략)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을 선정하기	위한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 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삭 제>

<삭 제>

<삭 제>

9 (현행과 같음)

	٠.		_	O	'	_	ш	/			
제	32	조(	적	용	ㅂ	보 우	])		 	 	 

- 1. ~ 5. (현행과 같음)
-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

####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저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 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 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 <u>업을</u> 말한다)
-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 <삭 제>

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u>
세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국가연구개빌</u>
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
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
한다)의 경우에

<삭 제>

지원사업

-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 토 요청 등) ① ~ ⑥ (생 략)
  -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개 하여야 한다.
  -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 차, 제7항에 따른 등록 ·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 행) ① (생 략)
  -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② ------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는 기록하고-----

<삭 제>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
토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등록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
<u>여야</u>
8
및 공개
의 내용 등은

- 행) ① (현행과 같음)
-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 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u>연구수</u> 형	생과정 '	및 연	구개
<u>발</u>	성과의	-기록 !	및 관i	리
	·			